

투자 위험 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영법인용MMF제4-26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영법인용MMF제4-26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신영법인용MMF제4-26호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신영자산운용주식회사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24년 3월 31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년 7월 12일 |
|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 쪽) |
| 7. 모집(매출) 기간
[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www.syfund.co.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 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의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 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영법인용 MMF 제 4-26 호 [펀드 코드: 36565]

투자 위험 등급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40% 이상을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여 원본손실위험, 금리 변동 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신영법인용MMF제4-26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는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용),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구분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C 형(수수료미정 구-오프라인)	없음	0.15%	0.085%	0.16%	0.157%	16	32	49	87	197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동종유형 : 국내단기금융형(투자신탁), 2024.04.29 공시 기준)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구분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C 형(수수료미정 구-오프라인)		2003-04-01	2023/04/01 ~ 2024/03/31	2022/04/01 ~ 2024/03/31	2021/04/01 ~ 2024/03/31	2019/04/01 ~ 2024/03/31								
	비교지수(%)		2003-04-01	3.74	3.30	2.49	1.95	2.73							
	수익률 변동성(%)		2003-04-01	3.61	3.11	2.33	1.80	2.60							
(주 1) 비교지수 : CALL 10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 경력년수			
						연평균 수익률(MMF·공모·국내)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운용전문인력	심창훈	1975	책임 (본부장)	45 개	10,305억원	3.89%	3.70%	3.89%	3.70%	12년 8개월			
운용전문인력	박하나	1980	부책임 (팀장)	44 개	10,301억원	-	-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24년 6월 30일												
운용전문인력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전문인력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원본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시장위험</p> <p>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계의 변경 등을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신용위험</p> <p>당해 투자신탁은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 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매입 방법	<p>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p>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오후 5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p>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환매 방법	<p>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p> <p>환매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2 영업일(D+1)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p> <p>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3 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p>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쪽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p>공시장소</p> <p>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p>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 <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body> </table>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 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신영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대표전화 : 02-6711-7500, 홈페이지 : www.syfund.co.kr)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매출 총액						
효력발생일	2024년 7월 12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3 부 1. 재무정보 (24 페이지) 및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28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 료	수수료 미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기관(I) 펀드등(F)	50억 이상 매입한 법인이 가입 가능한 종류입니다.
		퇴직연금 (P2)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y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yfund.co.kr)



QR코드를 스캔 해보세요.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신영법인용MMF제4-26호	36565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DM798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DM799
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ED543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ED544
C-P2e(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ED54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용)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X(해당 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 조좌 (1좌=1원, 원본액 기준)

(주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신영법인용MMF제4-26호	36565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DM798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DM799
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ED543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ED544
C-P2e(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ED54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3년 04월 01일	신영신종MMF 제4-26호 최초 설정
2008년 11월 20일	책임운용역 변경
2009년 04월 23일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신영신종MMF투자신탁4-26호 => 신영신종MMF 제4-26호]
2009년 09월 2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2010년 07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갱신 등
2011년 03월 15일	보수인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신설
2011년 05월 02일	1)책임투자운용인력 변경 2)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2011년 10월 25일	1)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신영신종MMF 제4-26호 => 신영신종법인용MMF 제4-26호] 2)신탁업자 변경 [(주)국민은행 => 한국증권금융(주)]
2012년 07월 02일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갱신
2013년 06월 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갱신
2013년 11월 0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14년 12월 15일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작성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2015년 07월 02일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법 개정사항 반영, 모집예정금액 확대, 채권평가회사 추가,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안내
2016년 01월 11일	운용인력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2016년 06월 02일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2016년 07월 02일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년 12월 02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 반영
2017년 05월 31일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2018년 04월 27일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2019년 05월 03일	운용인력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2019년 05월 30일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사항 보완
2019년 09월 25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0년 06월 16일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2021년 04월 14일	운용역 변경에 따른 갱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2021년 08월 26일	①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전환 ② 종류형 C-I형 신설 ③ 전자증권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④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2년 05월 10일	① 법인형 MMF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②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③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2022년 07월 29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23년 04월 01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3년 06월 20일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②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④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기재보완
2024년 03월 29일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따른 정정
2024년 04월 30일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및 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2024년 06월 13일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신영신종법인용MMF제4-26호 → 신영법인용MMF제4-26호) 투자대상자산 범위 일부 변경,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따른 정정
2024년 07월 12일	종류 C-F, C-P2, C-P2e형 클래스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신영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대표전화 : 02-6711-7500, 홈페이지 : www.syfund.co.kr)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24.06.30)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MMF 공모-국내)				운용 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심창훈	1975	책임 (본부장)	45 개	10,305억원	3.89%	3.70%					운용 경력: 12년 8개월 - NH-CA 자산운용 채권운용 - 현) 신영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박하나	1980	부책임 (팀장)	44 개	10,301 억원	-	-	3.89%	3.70%			운용 경력: 16년 6개월 - 알파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 한화자산운용 FI사업본부 - 다율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 한국투자증권 사모펀드운용부 - 현) 신영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 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동일 본부 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공모 기준) : 해당사항 없음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동 내역

운용 기간	운용전문인력
2021.04.14 ~ 2022.07.28	안기홍
2011.04.29 ~ 2024.03.28	허남권
2022.07.29 ~ 2024.06.12	고도희
2016.01.11 ~ 현재	심창훈
2024.06.13 ~ 현재	박하나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용),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종류의 구분에 관계없이 운용은 통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않는 수익증권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C-P2e(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다. 모자형 구조: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 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다만, 채무증권(법 제4조 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여,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으로서 은행이 발행한

- 채권(법 제71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6.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중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전자단기사채등
 8. 환매조건부매도
 9.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나.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2항 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 투자제한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 투자신탁재산을 채무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 및 영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무증권 : 자산총액의 100분의5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한다)

나. 어음 : 자산총액의 100분의 3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 대출한 금액

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 매수

(1) 만기 30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4.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6.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60일을 초과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 · 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8.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10.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양도성 예금증서 · 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 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 기업어음증권

다. 영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전자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의②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위의②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위의②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현금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 양도성 예금증서
4.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5.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6.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매수.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나목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 투자제한의 예외

① 위의① 제3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위의① 제8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 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용)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신탁계약서에서 허용하는 잔존만기 범위내의 우량자산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산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장부가 평가 유지를 위하여 일시적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산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형태로 운용합니다.

※ 비교지수 : Call 금리 100%

- 주1) 선정사유: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용)로 초단기자산에 주로 투자하므로, 그 속성을 반영하는 비교지수로 Call 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교지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주2) Call 금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콜(call)이며, 이러한 금융기관간에 발생한 과부족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콜시장이다. 잉여자금이 있는 금융기관이 콜론(call loan)을 내 놓으면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콜머니(call money)를 빌리는데, 이럴 때 형성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한다.

(2) 위험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 및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부분 환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사전적으로 검증된 투자 Universe(종목후보군) 종목 투자여부 점검
- 상품유형별, 펀드별 운용자산 만기분포 분석
- 특정업종 및 종목의 집중편입여부 점검 및 통제
- 보유 종목의 시장 유동성 모니터링 등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 및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용)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 및 어음 등의 이자수익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계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신고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상순자산가치 변동위험·이중가격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금액은 환매일의 출금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탁해지 위험	투자신탁의 경우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6등급(매우 낮은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 : 0.02%) 이 투자신탁은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는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시가형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가격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적으므로, 이자소득 등을 추구하며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주1)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수익률을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을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97.5% VaR 모형* 사용) 〉

등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 상기 표상 VaR 값 00% 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 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1)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을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합니다.

(주2) 모자형 구조의 경우 자펀드는 자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3) 클래스가 구분된 펀드의 경우 모든 클래스의 펀드는 운용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4)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간접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5) ELF, 레버리지ETF, 인버스 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경함)

(주6)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매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않는 수익증권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C-P2e(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오후 5 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② 오후 5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③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2 영업일(D+1)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② 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3 영업일 (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당일 매입 · 환매 적용 *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입 및 환매가 가능합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투자자의 매입대금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 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 또는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
- ②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자금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환매청구일 전일에 산출하여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는 경우

- ①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
- ②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

※매입 및 환매관련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 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 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 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내지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는 집합투자규약 제28조(환매연기) 및 제28조의2(선환매유인 관리조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	O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 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 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begin{aligned} \text{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수}} \\ &\quad \boxed{1좌 = 1원} \\ &\quad \boxed{1,000좌 기준 = 1,000원} \\ \text{실제 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수}} \\ &\quad \text{(수익증권 배합 및 환매 거래 시 기준)} \end{aligned}$$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집합투자재산은 장부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 ^{주1)} 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장부가 평가에 따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편입증권 등을 시가에 의하여 조정 평가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p>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장부가격 평가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격으로 평가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탁계약서 상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조치^{주2)}를 기재한 경우 2.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주 1) 유효이자율법 :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한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자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뜻함.

주 2)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7-36 조제 1 항제 2 호 각 목의 자산비율이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비중(30%)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 ⑥ 제 5 항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방안, 평가방법 변경(시가평가),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대표이사(위원장), 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위험관리담당 부서장, 운용지원담당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업 무	<p>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않는 수익증권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P2e(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부과기준		가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C형(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e(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 보수	0.050	0.050	0.050	0.050	0.050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0.085	0.030	0.030	0.040	0.020	
수탁회사 보수	0.010	0.010	0.010	0.010	0.01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5	0.005	0.005	0.005	0.005	
총 보수	0.150	0.095	0.095	0.105	0.085	
기타비용	0.002	-	-	-	-	사유 발생 시
총 보수.비용	0.152	0.095	0.095	0.105	0.085	-
(동종유형 총 보수)	0.150	-	-	-	-	-
합성 총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157	0.095	0.095	0.105	0.085	-
증권거래비용	0.016	-	-	-	-	사유 발생 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동종유형 : 국내단기금융형(투자신탁), 2024.03.29 공시 기준)
- (주6)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포함) 인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펀드 총보수를 제외한 기타 발생 가능한 비용의 하위 구성 내역

① 기타비용 :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위원회보수, 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후원기금), 기타비용(해외거래에택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증권거래비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수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거래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등), 대차거래비용(대차중개지급수수료 등)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증권거래비용	6,230,941

③ 금융비용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금융비용	-

④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연환산 추정치 비율로 상기 표에 기재하였습니다.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클래스종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 천원)				
	1년	2년	3년	5년	10년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16	32	49	87	197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10	19	30	52	119
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10	19	30	52	119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1	22	33	58	132
C-P2e(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9	17	27	47	107

주1)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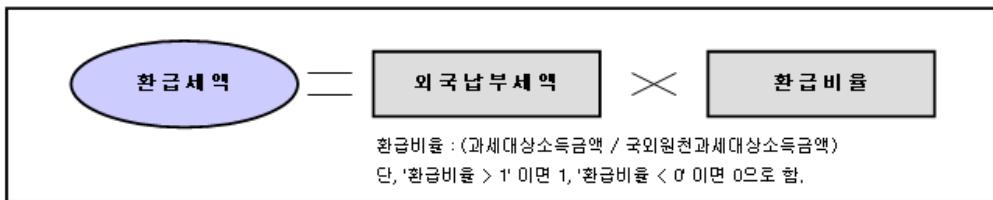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1)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2)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 환매 또는 이익분 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신탁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가격 산정시 반영하는 수익
기준가격	매매차익, 배당수익, 이자수익
과표기준가격	배당수익, 이자수익

(3)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① 기준가격/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1,100원
손익	(+) ¹⁰⁰ 원	(+) ¹⁰⁰ 원
세금		(+) ^{100원*} 세율(15.4%)=15.4원

② 기준가격/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900원
손익	(-) ¹⁰⁰ 원	(-) ¹⁰⁰ 원
세금		과세손익(-)이므로 세금 '0'원

③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예시: 매매손실 200원 배당수익 50원, 이자수익 50원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1,100원
손익	(-) ¹⁰⁰ 원	(+) ¹⁰⁰ 원
세금		(+) ^{100원*} 세율(15.4%)=15.4원

④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900원
손익	(+) ¹⁰⁰ 원	(-) ¹⁰⁰ 원

	세금		과세손익(-)이므로 세금 '0'원	
--	----	--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감사 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9기(2021.04.01 ~ 2022.03.31)	신한회계법인	적정
제20기(2022.04.01 ~ 2023.03.31)	신한회계법인	-
제21기(2023.04.01 ~ 2024.03.31)	신한회계법인	적정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항 목	제21기	제20기	제19기
	2024.03.31	2023.03.31	2022.03.31
운용자산	32,168,844,518	28,627,358,215	71,065,104,070
유가증권	0	3,327,637,180	4,003,514,30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4,452,235	208,821,720	36,512,787
기타 운용자산	32,144,392,283	25,090,899,315	67,025,076,977
기타자산	173,038,661	118,258,769	177,809,174
자산총계	32,341,883,179	28,745,616,984	71,242,913,24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179,613,713	803,463,820	658,664,332
부채총계	1,179,613,713	803,463,820	658,664,332
원본	31,162,269,466	27,942,153,164	70,584,248,912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0	0	0
자본총계	31,162,269,466	27,942,153,164	70,584,248,912
운용수익	1,502,294,539	1,392,032,332	1,191,620,714
이자수익	1,494,960,609	1,403,754,819	1,244,817,926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손익	7,333,930	-11,722,487	-53,197,212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67,409,502	85,484,437	194,280,053
관련회사보수	58,613,731	77,554,150	178,255,070
매매수수료	6,230,941	6,886,197	11,160,492

기타비용	2,564,830	1,044,090	4,864,491
당기순이익	1,434,885,037	1,306,547,895	997,340,661
매매회전율	-	-	-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21기 0월, 20기 0월, 19기 0월 발생)

(주 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21기 0월, 20기 0월, 19기 0월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이외의 증권	31,559,755,179	-	-	82,403,339,495	-	-
합 계	31,559,755,179	-	-	82,403,339,495	-	-

(주1) 주식 중개수수료, 공모주 청약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31.85

(주1)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ETF 제외한 공모펀드-증권 펀드 유형)을 의미합니다.

(주2)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상기 정보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매매회전율 관련 내용이 기재되며, 자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모집합투자기구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항 목	제21기		제19기	
	2024.03.31	2023.03.31	2022.03.31	2022.03.31
운용자산	32,168,844,518	28,627,358,215	71,065,104,070	
현금및예치금	24,452,235	208,821,720	36,512,787	
현금및현금성자산	24,452,235	208,821,720	36,512,787	
대출채권	32,144,392,283	25,090,899,315	67,025,076,977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2,700,000,000	10,200,000,000	11,100,000,000	
매입어음	19,444,392,283	14,890,899,315	55,925,076,977	
유가증권	0	3,327,637,180	4,003,514,306	
채무증권	0	3,327,637,180	4,003,514,306	
기타자산	173,038,661	118,258,769	177,809,174	
미수이자	173,038,661	115,124,619	177,809,174	
선급비용	0	3,134,150	0	
자 산 총 계	32,341,883,179	28,745,616,984	71,242,913,244	

기타부채	1,179,613,713	803,463,820	658,664,332
미지급운용수수료	2,550,655	2,149,649	6,053,657
미지급판매수수료	4,336,090	3,654,423	10,291,191
미지급수탁수수료	510,134	429,938	1,210,744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255,060	214,986	605,378
수수료미지급금	2,369,174	530,684	2,772,848
미지급이익분배금	1,169,592,600	796,484,140	637,730,514
부 채 총 계	1,179,613,713	803,463,820	658,664,332
원 본	31,162,269,466	27,942,153,164	70,584,248,912
자 본 총 계	31,162,269,466	27,942,153,164	70,584,248,912
부채 및 자본 총계	32,341,883,179	28,745,616,984	71,242,913,244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항 목	제21기	제20기	제19기
	2023.04.01 ~ 2024.03.31	2022.04.01 ~ 2023.03.31	2021.04.01 ~ 2022.03.31
운용수익(운용손실)	1,502,294,539	1,392,032,332	1,191,620,714
투자수익	1,494,960,609	1,403,754,819	1,244,817,926
이자수익	1,494,960,609	1,403,754,819	1,244,817,926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7,410,653	2,737,172	578,470
채무증권매매차익	7,410,653	2,737,172	578,47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76,723	14,459,659	53,775,682
채무증권매매차손	76,723	14,459,659	53,775,682
운용비용	67,409,502	85,484,437	194,280,053
운용수수료	19,537,976	25,851,434	59,496,318
판매수수료	33,214,666	43,947,594	100,910,188
수탁수수료	3,907,453	5,170,144	11,899,106
사무수탁수수료	1,953,636	2,584,978	5,949,458
매매수수료	6,230,941	6,886,197	11,160,492
이자비용	0	0	586,381
기타운용비용	2,564,830	1,044,090	4,278,110
당기순이익	1,434,885,037	1,306,547,895	997,340,66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신영법인용 MMF 제 4-26 호(운용)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1/04/01~2022/03/31	133,379	133,379	307,046	308,361	370,882	372,599	70,524	71,240
2022/04/01~2023/03/31	70,524	70,524	218,377	220,579	261,711	264,459	27,906	28,745
2023/04/01~2024/03/31	27,906	27,906	189,852	193,340	187,475	191,240	31,122	32,340

신영법인용 MMF 제 4-26 호 C 형(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4/01~2022/03/31	0	0	189,860	190,910	250,411	251,790	70,584	71,222
2022/04/01~2023/03/31	70,584	70,584	218,002	220,064	261,159	263,731	27,942	28,739
2023/04/01~2024/03/31	27,942	27,942	189,256	192,606	186,770	190,385	31,162	32,332

신영법인용 MMF 제 4-26 호 C-I 형(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11/30~2022/03/31	5,000	5,000	5,000	5,000	5,000	5,005	0	0
2022/04/01~2023/03/31	0	0	0	0	0	0	0	0
2023/04/01~2024/03/31	0	0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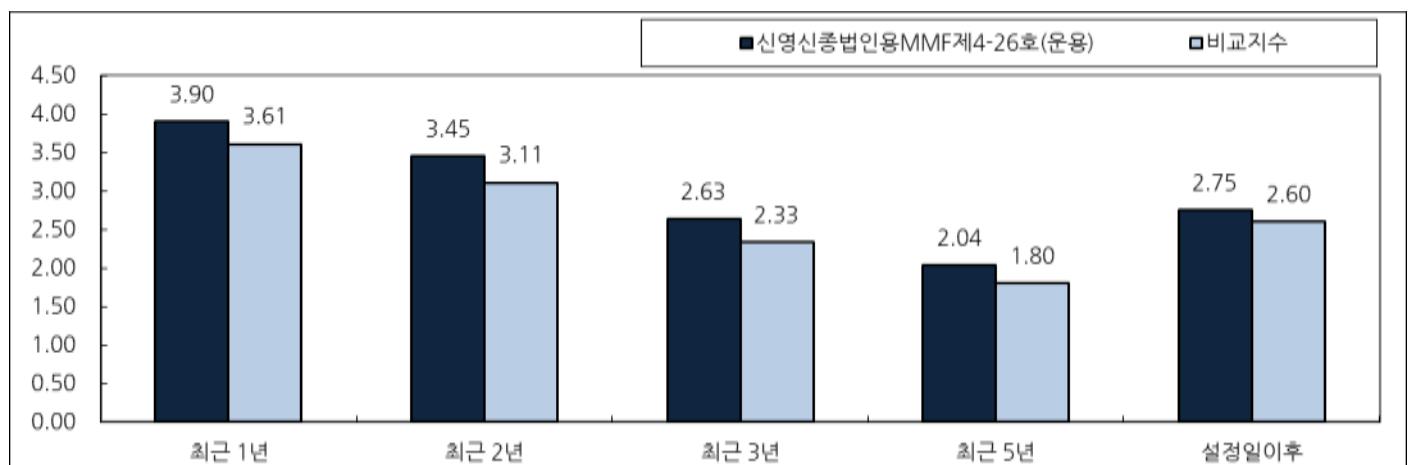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3/04/01 ~ 2024/03/31	2022/04/01 ~ 2024/03/31	2021/04/01 ~ 2024/03/31	2019/04/01 ~ 2024/03/31	(%)
운용펀드	2003-04-01	3.90	3.45	2.63	2.04	2.75

비교지수	2003-04-01	3.61	3.11	2.33	1.80	2.60
수익률 변동성(%)	2003-04-01	0.01	0.11	0.18	0.18	0.17
C형(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2003-04-01	3.74	3.30	2.49	1.95	2.73
비교지수	2003-04-01	3.61	3.11	2.33	1.80	2.60
수익률 변동성(%)	2003-04-01	0.01	0.11	0.16	0.16	0.16
C-I형(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2021-11-30	-	-	-	-	0.04
비교지수	2021-11-30	-	-	-	-	0.04
수익률 변동성(%)	2021-11-30	-	-	-	-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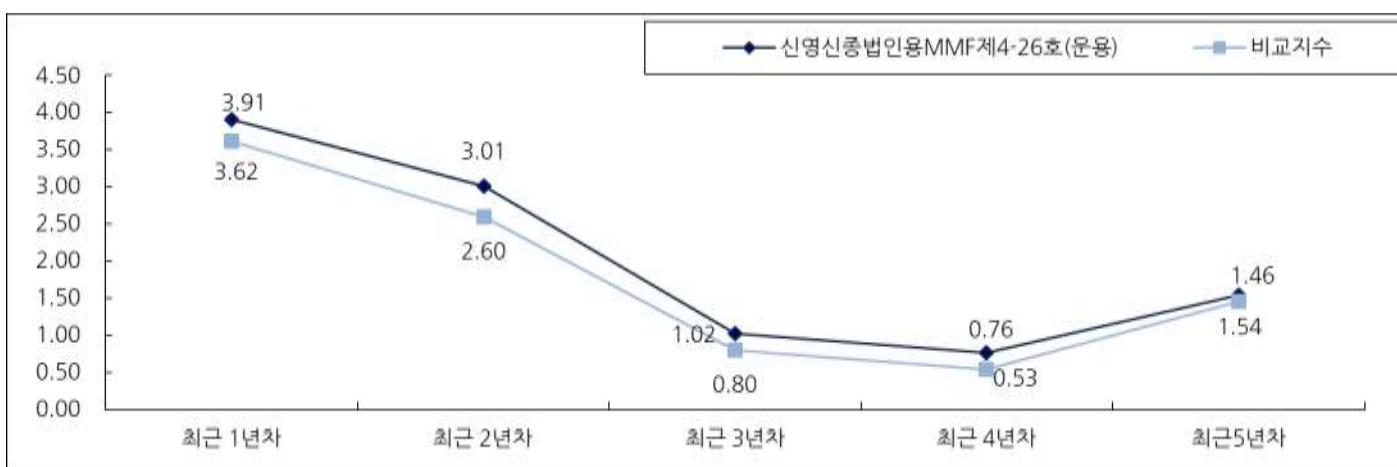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CALL 10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3/04/01 ~ 2024/03/31	2022/04/01 ~ 2023/03/31	2021/04/01 ~ 2022/03/31	2020/04/01 ~ 2021/03/31	2019/04/01 ~ 2020/03/31
펀드	2003-04-01	3.91	3.01	1.02	0.76	1.54
비교지수	2003-04-01	3.62	2.60	0.80	0.53	1.46
C형(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2003-04-01	3.75	2.85	0.90	0.76	1.54
비교지수	2003-04-01	3.62	2.60	0.80	0.53	1.46
C-I형(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2021-11-30	-	-	-	-	-
비교지수	2021-11-30	-	-	-	-	-

(주 1) 비교지수 : CALL 10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세전기준)

신영법인용MMF4-26호(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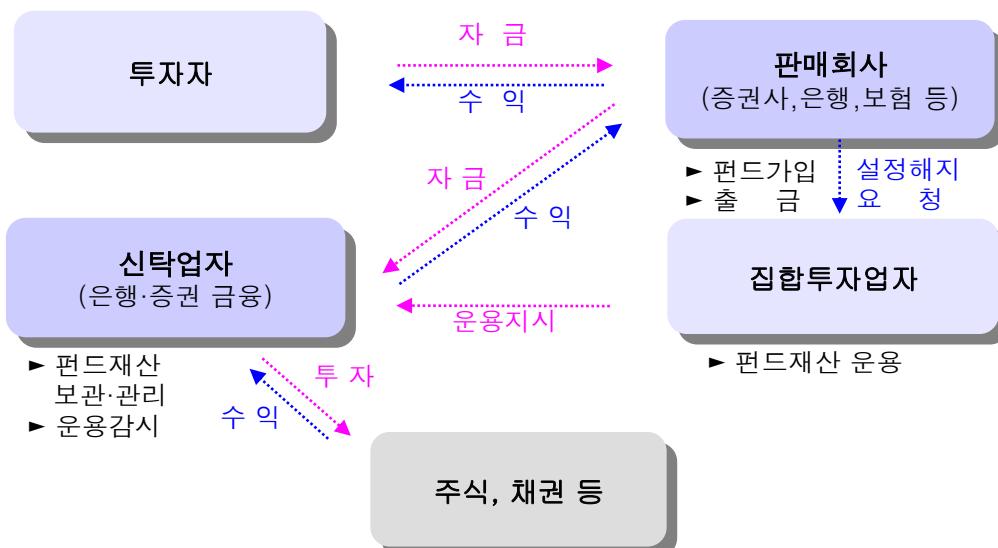
[2023.03.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 민국	0	0	19,613	0	0	0	0	0	0	25	12,704	32,342
	(0.00)	(0.00)	(60.64)	(0.00)	(0.00)	(0.00)	(0.00)	(0.00)	(0.00)	(0.08)	(39.28)	(100.00)
자산 합계	0	0	19,613	0	0	0	0	0	0	25	12,704	32,342
	(0.00)	(0.00)	(60.64)	(0.00)	(0.00)	(0.00)	(0.00)	(0.00)	(0.00)	(0.08)	(39.28)	(100.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신영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대표전화 : 02-6711-7500, 홈페이지 : www.syfund.co.kr)
회사 연혁	1996.08. 신영투자신탁운용(주) 설립 1996.08. 증권투자신탁 운용업 허가 (증업45332-235) 1997.05. 투자자문업등록 (등록번호 제44호, 증업41299-150) 1997.06. 투자일임업 허가 (증업41299-172) 1999.01. 자산운용회사 등록 (등록번호 9, 감독 7 6114-34) 2000.12. 유상증자 20억원 (자본금320억원) 2009.02. 신영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15.10.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23.12. 종합자산운용사 인가
자본금	320억
주요주주 현황	신영증권(주) (85.9%), 코리안리재보험(주) (9.4%), 서울보증보험(주) (4.7%)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현황	판매회사: 신영증권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제27기 2023.3.31	제26기 2022.3.31	계정과목	제27기 2022.4.1~ 2023.3.31	제26기 2021.4.1~ 2022.3.31
현금 및 예치금	401	4,087	영업수익	20,579	23,880
유가증권	137,816	121,055	영업비용	12,870	12,797
유형자산	6,092	6,384	영업이익	7,709	11,083
기타자산	11,719	19,767	영업외수익	1,336	1,040
자산총계	156,028	151,293	영업외비용	63	64
예수부채	0	289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8,982	12,059
기타부채	3,643	5,575			
부채총계	3,643	5,864			
자본금	32,000	32,000			
이익잉여금	120,872	113,910	법인세비용	2,020	2,91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87	-481			
자본총계	152,385	145,429	당기순이익	6,962	9,144
부채와 자본총계	156,028	151,293			

라. 운용자산 규모

(2024.03.29 현재 / 단위 : 억원 / 일임자산 제외)

구분	증 권			MMF	파생 상품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재간접	실물 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설정액	22,535	7,628	197	471	0	0	0	0	611	0	31,44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증권금융(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02-3770-8800
홈페이지	www.ksfc.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 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⑩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66 ☎ 02-6714-4600
홈페이지	www.hanais.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자산평가	에프엔자산평가
주 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00	서울시 강서구 마곡 중앙2로 61 ☎ 02-721-53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총회의 소집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 ▶ 총 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 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신영 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syfund.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결산서류는 1.재무상태표, 2.손익계산서, 3.자산운용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임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지분증권거래>	<p>1)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 대비 수익 - 거래유형별 매매체결 능력의 우수성 -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및 자금결제의 위험성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2)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구성원이 증개회사별로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매월 평가 가능한 투자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 3) 평가항목 - 자료 및 정보의 질, 펀드 성과 기여도, 세미나 개최 및 기업탐방 주선 등의 조사분석서비스의 유용성과 주문집행의 정확성, 체결단가의 적합성, 정보사항의 신속성,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태 및 자금결제의 안정성 및 업무 담당자의 역량 등 주문집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채무증권거래>	<p>1)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 대비 수익 - 거래유형별 매매체결 능력의 우수성 -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및 자금결제의 위험성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2)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구성원이 증개회사별로 100점 만점을 원칙으로 매 반기 평가 가능한 투자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 3) 평가항목 - 호가경쟁력, 신속성 및 정확성, 호가 투명성, 가격 대응 신의성실성, 세미나 주선, 시장정보 및 뉴스, 호가 대응력, 채권종류별 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장내파생상품거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 특성 및 상기 선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운용총괄책임자 및 채권운용본부장이 결정하여 거래할 수 있음

(주) 1) 매매대가 이익 : 증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증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펀드코드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 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집합투자기구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형집합투자기구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로서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혼합/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서, 주식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주식혼합형, 주식에 최대투자 가능비율이 50% 미만인 펀드를 채권혼합형이라고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전에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고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 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위험평가액	법 시행규칙 제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위험평가액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리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어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해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